

# NEWSLETTER515

March 2021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재활용의무(이하 "EPR")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 포장재 수입·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의무사항과 제출 방법, 대상 품목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요 내용

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출고·수입실적서) 제출

o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까지

o 제출방법: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제출

o 제출서류 :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또는 수입량 및 개당 무게 증빙서류 등

#### 2. EPR이행(분담금 납부)

ㅇ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3항〉

- ㆍ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 \* 분담금: 재활용의무량(kg) x 분담금 단가(원)
- \* 분담금 공제 방법 : ①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 ② 위탁하여 회수·재활용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3항〉

-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부과하여 징수
-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미이행량(kg) x 기준비용(원)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미이행가산률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재활용실적



### 3. 대상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 ㅇ 작성기준

- 제조업자(국내 OEM 주문자 포함) :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
- 수입업체(납세의무자)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
- o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는 제외대상 (제외대상별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 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및 면제 대상 기준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포함(PVC 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자	분류		종이팩·금 <del>속</del> 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출고량	4 <mark>톤</mark> 미만	0.8 <del>톤</del> 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수입량	1 <b>톤</b> 미만	0.3 <mark>톤</mark> 미만	3 <mark>톤</mark> 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자	해당 없음				

### ㅇ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① 종이팩 ② 금속캔(철, 알루미늄) ③ 유리병 ④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① 전지류 ② 타이어 ③ 윤활유 ④ 형광등 ⑤ 수산물 양식용부자
- 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⑦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⑧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 5종(PVC 제외)

#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책자(E이것이 P프로의 R리사이클)

## Contact



박영기 관세전문가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민경호 관세전문가 T 02-6011-3106 E khmin1@esein.co.kr

# SEIN

###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